

# 노 사 합 의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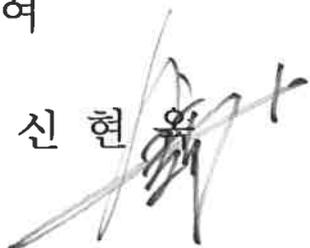
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개정 에 따라  
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.

1.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직원의 출산전후  
휴가기간을 120일로 하며, 이 중 유급휴가기간은 90일로 한다.
2. 시행일은 2014.7.1일자로 한다.
  - 본 합의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단체협약 및 회사의 제규정을  
본 합의내용으로 대체하여 효력을 인정하며, 차기 단체협약  
개정시 본 합의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한다.

2014.6.1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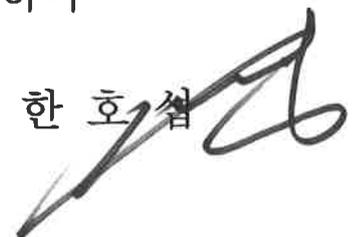
주식회사 케이티  
회장을 대리하여

경영지원실장 신 현



kt노동조합  
위원장을 대리하여

사업지원실장 한 호



## 다태아산모 출산전후휴가기간 연장

□ 목적 : 다태아 산모의 난산, 높은 조산율 등에 대비한 안정 및 회복 기간 확보

※ 다태아 산모 :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산모

□ 근거 : 근로기준법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개정

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~ ③ : 생략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
□ 제도 개선내용

	일반산모	다태아산모(신설)
휴가기간	90일 (유급 70일)	120일 (유급 90일)

※ KT의 경우 법권고사항보다 유급휴가를 일반산모는 10일, 다태아산모는 15일 추가 부여

□ 시행일 : 2014.7.1